

무배당 IBK참좋은연금보험_1504

상품요약서

이 상품요약서는 무배당 IBK참좋은연금보험_1504의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문 : 무배당 IBK참좋은연금보험_1504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 ① 0세부터 77세까지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② 보험가입시에는 종신연금형 중 선택이 가능하며, 연금지급형태는 납입기간 종료 후부터 연금개시 전일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해지환급금의 60%이내에서 필요자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으며, 인출할 때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이내(2,000원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인출 수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④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후 적립액이 아래에서 정한 최소적립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 기본보험료의 2배와 200만원 중 큰 금액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 500만원(상속연금형의 해지환급금 기준)

⑤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적립액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연금지급형태가 상속연금형 또는 상속연금형과 다른 연금지급형태를 함께 선택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상속연금형의 해지환급금에서 인출됩니다.

⑥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추가로 해당월까지 납입할 기본보험료의 200%이내에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⑦ 매월 기본보험료가 30만원 초과인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기본보험료	보험료 할인금액
30만원 초과	기본보험료 30만원 초과금액의 1.0%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보험료의 할인금액을 기본보험료에서 할인하여 수급하지 않고, 보험료 납입시(선납시 해당 납입회차 계약해당일) 적립액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다만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법과 할인 금액만큼 적립액에 가산하는 방법은 가입시 선택할 수 있으며 변경은 불가합니다)

⑧ 회사는 5년 이상 기본보험료를 완납한 계약에 한하여 아래 해당 납입회차의 기본보험료 납입시 아래 장기납입 우대금액을 적립액에 추가로 적립합니다.

납입회차	장기납입 우대금액
61회 이상 120회 이하	기본보험료의 0.5%
121회 이상	기본보험료의 1.0%

단, 선납보험료의 경우 해당 회차 계약응당일에 우대금액을 추가 적립합니다.

⑨ 연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점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이상이며, 500만원 이상인 경우 조기연금전환옵션을 통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⑩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나고 연금개시시점까지 2년 이상 남은 계약 중 전환하고자 하는 시점의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상이며, 500만원 이상인 경우 무배당 변액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문 : 무배당 변액연금전환특약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 이 상품은 주계약 지급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납보험료로 납입하고,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펀드를 조성하여 그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이 변동하는 특약입니다. 무배당 변액연금전환특약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① 0세부터 75세까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특약으로 전환시 또는 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중 최대 2가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특약은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이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됩니다.
- ④ 이 상품은 특별계정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이익 또는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 ⑤ 이 상품은 해지환급금에 대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연금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보장해드립니다.
- ⑥ 무배당 변액연금전환특약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가입자격요건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IBK참좋은연금보험_1504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최소거치기간,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계약일로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보험료 납입기간	5년납, 7년납, 10년납 이상	
거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후 연금개시 전까지의 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0세~(A-10)세	
피보험자 연금개시나이(A)	45세~87세	
보험료 납입주기	기본보험료 : 월납 / 추가납입보험료 : 수시납	

3.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	- 종신연금형 : 기본연금형, 조기집중형 : 10년, 20년, 30년, 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
--------	--

4. 보험료 납입한도

주계약 : 무배당 IBK참좋은연금보험_1504

(1) 기본보험료

보험계약 체결시 또는 보험계약 변경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른 최저기본보험료 및 최소거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입기간	최저기본보험료	최소거치기간
5년납	15만원이상	5년
7년납	10만원이상 15만원미만	4년
	15만원이상	3년
10년납 이상	10만원이상	2년

(2)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납입 가능합니다.

-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

$$= (\text{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 + \text{선납보험료}) \times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중도인출금액의 합계

(3) 기본보험료의 증액 및 감액

기본보험료의 증액은 가입 후 2년이 지난 후부터 가능하고 증액보험료의 합은 가입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합니다. 감액은 가입 후부터 가능하며 감액 후 보험료는 납입기간 별 최소보험료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본보험료를 감액하는 경우 회사는 감액된 부분에 대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 무배당 변액연금전환특약

(1) 기본보험료

이 특약의 기본보험료(전환일시금)는 이 특약으로 전환시 일시에 납입되는 전환전계약 해지환급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말하며, 5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전환후 1개월 경과시점부터 (연금개시나이 - 10세)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 = 기인출한 중도인출금액의 합계

5. 건강진단 여부

이 보험의 경우 기존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 피보험자의 나이, 청약서 상의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1. 상품의 구성

주계약	무배당 IBK참좋은연금보험_1504
선택특약	+ 무배당 변액연금전환특약
	+ 단체취급특약

2. 보험금 지급내용

다음은 보험금 지급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계약 : 무배당 IBK참좋은연금보험_1504

■ 종신연금형 보증기간형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액
기본연금형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Step별 해당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10년, 20년, 30년, 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지급)
조기집중형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Step별 해당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연금개시후 10년동안(10회까지)의 연금연액이 10년 이후(11회부터)의 연금연액의 1.5배, 2배 또는 3배가 되도록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10년, 20년, 30년, 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지급)
부부연금형	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Step별 해당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10년, 20년, 30년, 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지급)
	주피보험자가 연금개시 후에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보증지급기간 이후에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주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받은 연금연액의 70%를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 확정연금형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60년, 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Step별 해당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 나누어 산출한 연금액을 피보험자의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

■ 상속연금형

지 급 사 유	지 급 액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Step별 해당 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

■ 일시생활자금

지 급 사 유	지 급 액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시점에 살아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 X 일시생활자금 분할비율]을 계산한 금액을 적립액에서 인출하여 지급

1. 계약자는 보험가입시 종신연금형 보증기간형(기본연금형, 조기집중형) 중에서 선택가능하며, 납입기간 종료 후부터 연금개시전일까지 최초 청약시 선택한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자는 보험가입시점에 정해진 종신연금형을 다른 연금지급형태로 변경할 수 있으며, 연금개시나이 및 연금지급형태를 각각 최대 2가지(Step당 1가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지급형태별 분할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일시생활자금의 분할비율 및 연금지급형태별 분할비율의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3. Step별 해당 적립액이란, 2-Step 연금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는 Step1의 분할비율을 [100% - 일시생활자금 분할비율]로 하여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에 Step1 분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2-Step 연금을 선택한 경우의 Step별 해당 적립액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 Step1 해당 적립액 :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 X Step1 분할비율

- Step2 해당 적립액 :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 X Step2 분할비율]을 Step2 연금개시나이까지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선택특약 : 무배당 변액연금전환특약

■ 종신연금형(보증기간형)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액
기본연금형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X 종신연금형(보증기간형_기본연금형) 분할비율]을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 (10년, 20년, 30년, 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지급)
부부연금형	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X 종신연금형(보증기간형_부부연금형) 분할비율]을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 (10년, 20년, 30년, 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지급)
부부연금형	주피보험자가 연금개시 후에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보증지급기간 이후에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주피보험자 생존시 연금연액의 70% 또는 100%를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

■ 종신연금형(보증금액형)

지 급 사 유	지 급 액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X 종신연금형(보증금액형) 분할비율]을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 단, 사망시에는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X 종신연금형(보증금액형) 분할비율]을 계산한 금액과 이미 지급되어진 보증금액형 연금총액과의 차이를 일시금으로 지급(이미 지급되어진 보증금액형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X 종신연금형(보증금액형) 분할비율]을 계산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는 일시금 없음)

■ 확정연금형

지급 사유	지급액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60년, 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X 확정연금형 분할비율]을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 나누어 산출한 연금액을 피보험자의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

■ 상속연금형

지급 사유	지급액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X 상속연금형 분할비율]을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

※ 계약자는 무배당 변액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시 또는 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상기 연금지급형태 중 최대 2가지로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형태별 분할비율의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3. 일반적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① 계약전 알릴의무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④ 보험금 부지급 사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2년 이내)

◆ 보험료 산출기초

1. 적용이율

문 :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답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이 보험의 적용이율은 연복리 3.25%입니다.

2. 적용위험률

문 : 적용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답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일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연금개시나이		
		50세	60세	70세
위험률	남 자	0.00149	0.00242	0.00565
	여 자	0.00063	0.00079	0.00195

※ 가입나이 40세 기준

3.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문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은 무엇인가요?
답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4. 적립이율

<p>적립이율이란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의 납입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나가는데, 이 적립금을 적립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p> <p>무배당 IBK참좋은연금보험_1504는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¹⁾와 운용자산이익률²⁾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³⁾을 가감하여 매월 회사가 결정하는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상품입니다. 2015년 4월 현재 적립이율은 연복리 3.53%이며, 공시이율이 변동될 경우 이 보험의 적립이율도 변동됩니다.</p> <p>1)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및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고려하여 산출</p> <p>2) 운용자산이익률은 직전 12개월 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과 투자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출</p> <p>3) 조정률을 가감한 공시이율은 공시기준이율의 80% ~ 120% 범위 내로 함</p> <p>※ 공시이율 산출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무배당 IBK참좋은연금보험_1504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

5. 최저보증이율

최저보증이율은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여도 회사에서 보증해드리는 적용이율의 최저한도로서 무배당 IBK참좋은연금보험_1504에 적용된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체결후 10년 이내 기간 동안은 연복리 2.0%(일복리 0.005426%), 10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은 연복리 1.5%(일복리 0.004079%) 입니다.

◆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배당은 배당상품에 한하여 실시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지환급금 산출 기준 등 안내

문 : 해지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뭔가요?
 답 : 우리 IBK연금보험주식회사는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해지공제액)를 공제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써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 기본보험료 20만원, 가입나이 40세, 15년납, 60세 연금개시) (단위 : 원)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최저보증이율		표준이율(연3.25%)		공시이율(연3.53%)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600,000	-	0.0%	-	0.0%	-	0.0%
6개월	1,200,000	192,040	16.0%	195,837	16.3%	196,683	16.3%
9개월	1,800,000	762,027	42.3%	770,198	42.7%	772,022	42.8%
1년	2,400,000	1,334,676	55.6%	1,348,901	56.2%	1,352,080	56.3%
2년	4,800,000	3,652,160	76.0%	3,707,826	77.2%	3,720,330	77.5%
3년	7,200,000	6,013,308	83.5%	6,139,053	85.2%	6,167,439	85.6%
4년	9,600,000	8,418,993	87.6%	8,644,930	90.0%	8,696,190	90.5%
5년	12,000,000	10,870,106	90.5%	11,227,884	93.5%	11,309,467	94.2%
6년	14,400,000	13,379,685	92.9%	13,902,630	96.5%	14,022,480	97.3%
7년	16,800,000	15,936,771	94.8%	16,659,940	99.1%	16,826,521	100.1%
8년	19,200,000	18,461,396	96.1%	19,421,939	101.1%	19,644,324	102.3%
9년	21,600,000	21,036,514	97.3%	22,273,702	103.1%	22,561,596	104.4%
10년	24,000,000	23,663,135	98.5%	25,218,147	105.0%	25,581,847	106.5%
15년	36,000,000	37,458,971	104.0%	42,100,156	116.9%	43,024,929	119.5%
20년	36,000,000	40,166,965	111.5%	49,205,351	136.6%	50,977,382	141.6%

◆ 모집수수료율

문 : 모집수수료란?
모집수수료란 저축성 보험계약 1건당 예정된 모집수수료로서 보험회사가 상품별 최적사업비 가정에 따라 부가된 사업비 중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기준 : 기본보험료 20만원, 남자40세 15년납, 60세 연금개시)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합계
모집수수료율	2.48%	0.13%	0.12%	0.12%	3.19%

※ 1년~4년이후까지의 “연도별 모집수수료율”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전체보험료 대비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연도별 모집수수료”의 비율입니다.

※ “모집수수료율 합계”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전체보험료 대비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전체 모집수수료”의 비율입니다.

※ 위에서 예시한 모집수수료율은 보험회사가 모집인에게 장래에 지급될 금액을 예상한 것으로, 실제 지급될 모집수수료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제금액 공시에 대한 사항

□ 수수료 안내표

1) 기본비용 및 수수료

(기준 : 남자 40세, 15년납, 60세 연금개시, 기본보험료 월 20만원)

1~7년	8~10년	10년 이후
11.77%	9.57%	5.00%

구분	목적	시기	비용
보험관계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7년 이내 : 기본보험료의 6.77% (13,540원) 7년 이후 10년 이내 : 기본보험료의 4.57% (9,140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납입기간이내: 기본보험료의 5.00%(10,000원) 납입기간이후: 3,000원
	위험보험료	-	없음
연금수령기간 중 비용	연금수령기간 중의 관리비용	연금 수령시	종신연금형 : 연금연액의 0.7% 확정/상속연금형 : 연금연액의 0.6%
해지공제	해지에 따른 패널티	해지시	아래 도표 참조

※ 해지공제비용

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이상
해지공제금액(만원)	81	68	54	41	27	14	0
해지공제비율	33.6%	14.0%	7.5%	4.2%	2.3%	1.0%	0%

(주) 상기 해지공제비율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공제금액의 비율입니다.

2) 추가 비용 및 수수료

구분	목적	시기	비용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유지, 관리비용	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2.0% (기인출한 중도인출 합계액 이내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의 0.3%(30,000원 한도))
중도인출수수료	중도인출에 따른 비용	중도인출시	인출금액의 0.2%(2,000원 한도) 단, 연 4회에 한하여 면제

◆ 주요 민원사항

<유형1> 은행 적금 또는 원금보장 상품으로 인지한 사례
<p>은행의 적금과 같이 원금보장 상품으로 알고 가입했으나, 알고 보니 중도 해지하는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연금보험상품으로 가입된 것에 대한 불만 제기</p> <p>* 연금보험은 장기적으로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주 목적으로 보험 상품이며, 단기 목돈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은행의 저축성 상품과는 다릅니다.</p> <p>보험계약을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사업비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p>
<유형2> 사업비 차감 관련
<p>사업비 차감 사실을 설명 받지 못했거나, 가입 당시 설명 받은 사업비 차감 수준이 사실과 달리 과소한 수준으로 알고 가입된 것에 대한 불만 제기</p> <p>* 이 상품은 연금보험 상품으로 적립액은 납입보험료 전체가 아닌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계산됩니다. 사업비 수준은 가입 당시 제공되는 "핵심 상품설명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유형3> 중도인출 관련
<p>납입한 보험료(원금)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복리 저축성 상품이라는 설명만 듣고 가입한 후, 수개월이 지나 중도인출 가능금액을 알아본 결과, 원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으며, 최소적립액 이상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불만 제기</p> <p>* 연금보험 상품은 중도인출하는 경우 납입한 보험료(원금)가 아닌 해지환급금의 일정비율 한도 내에서 인출 가능하며, 장래 유지비를 총당할 최소적립액을 남겨 두어야 하므로 일정기간 경과 후에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인출하는 경우 인출금액만큼 적립액이 감소되어 해지환급금 및 장래 연금액이 줄어듭니다.</p>